

제418회 국회
(정기회)

여성가족위원회 회의록
(법안심사소위원회)

제 3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4년9월23일(월)

장 소 여성가족위원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03)
2.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87)
3.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07)
4.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84)
5.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87)
6.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61)
7. 양육비 대지급을 위한 특별법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97)
8.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27)
9.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74) 번안의 건(추가)
10.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67) 번안의 건(추가)
1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30) 번안의 건(추가)
1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77) 번안의 건(추가)
1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44) 번안의 건(추가)

상정된 안건

1.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03) 2

2.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87)	2
3.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07)	3
4.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84)	3
5.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87)	3
6.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61)	3
7. 양육비 대지급을 위한 특별법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97)	3
8.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27)	3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9
9.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74) 번안의 건	9
10.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67) 번안의 건	9
1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30) 번안의 건	9
1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77) 번안의 건	10
1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44) 번안의 건	10

(14시01분 개의)

○ 소위원장 김한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정기회) 제3차 여가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2차 법안소위에서 결론내지 못했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건하고 양육비 대지급을 위한 특별법안 1건에 대해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안 심사를 위해 신영숙 여성가족부차관께서 출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1.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03)**
 2.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87)**

3.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07)
4.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84)
5.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87)
6.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61)
7. 양육비 대지급을 위한 특별법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97)
8.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27)

○소위원장 김한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8항까지 7건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1건의 양육비 대지급을 위한 특별법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동안 논의를 다 했으니까, 지금 여가부에서 자료를 하나 준비해 주셨는데 양육비 선지급 대상 및 소요예산 추계(안)을 준비해 오신 것 같은데 이것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미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의 쟁점은 이겁니다. 저희가 양육비 채권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선지급 지원 대상을 정할 거냐, 아니면 아무런 소득기준 없이 지원 대상을 정할 거냐, 만약에 소득요건을 정한다고 하면 얼마로 할 거냐, 이게 오늘의 논의사항입니다.

관련해서 지난 회의 때 저희가 여성가족부에 요청드렸던 것은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서 예산 추계가 어떻게 되는지 자료를 준비해 주십사 부탁을 드렸고 또 정부 내 다른 부처, 기재부를 포함해서 정부 부처와 내부적으로 협의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면 여가부에서 준비된 자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관련 의견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차관 신영숙 나눠 드린 양육비 선지급 대상 및 소요예산 추계(안)에 관련된 자료는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자료 추계를 한 것입니다. 단 제도 시행 전에 정확한 실태 파악이 어렵고 변동 가능성성이 높아서 정확한 추계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래서 양육비 채권확보율에 따라서 이 소득기준이 다르게 또 대상과 소요예산을 저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현재 양육비 실태조사에 따르면 양육비 채권확보율이 21.3%고요. 그다음에 채권이 결정이 안 된 그 비율의 나머지를 추가해서 그 최대치를 48.3%, 더 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 레인지(range) 중간에 35%를 한번 잡아봤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처음에 기준안으로 제시를 그때 설계할 당시에 하려고 했었던 부분은 중위 100%를 두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대상이 1만 7900여 명이고 소요예산은 432억 원이 드는 걸로 했고 이 부분이 채권확보율이 올라갈수록 인원수와 예산도 올라가게 됩니다.

그다음에 중위 125%를 하나 추계 자료를 잡은 부분은 저희가 현재 한부모 법률지원

서비스를 양육비이행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지원 서비스를 하는 우선순위 소득기준 대상이 125%라서 이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이행원의 의견을 들어서 이 인원도 한번 추계를 했습니다. 그것에 따르면 대상은 1만 8600명이고 예산은 14억 원이 더 들어가는 446억 원이고 역시 채권확보율에 따라 그 예산은 늘어나게 됩니다.

그다음에 지난 소위 때 하나 예시로 제시를 해 주셨던 중위 150% 이하 이 부분은 아이돌봄 지원 관련 중위소득 기준입니다. 여기에 따르면 대상은 1만 8900명이고 예산은 454억 원 소요되는 걸로 추정을 했고 역시 채권확보율이 올라감에 따라서 그 예산도 증가하게 됩니다. 참고로 그걸 봐 주시고요.

그 밑에 25년도 기준 중위소득 보건복지부 고시안에 따르면 이게 한부모가족이 자녀가 2명 있을 때를 가정한 3인 가구일 경우 중위소득 100%, 125%, 150%에 따라서 월 소득 수준이 지금 이 정도로 돼 있다라는 걸 참고자료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현재 한부모가족을 지원하고 있는 기준 지원 대상 순입니다. 양육비 지원을 할 때 한부모 같은 경우는 중위 63%고 그다음에 청소년 한부모의 경우에는 중위 65% 이하를 기준으로 잡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같은 경우 중위 75% 이하를 기준으로 저희가 지원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한번 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현재 이 선지급 대상 추계 산식과 앞서 말했듯이 선지급 대상 추계에 한계가 있다라는 부분들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저희가 제시를 해 봤습니다. 자료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 짧은 시간인데 관련 자료 잘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차관님이 설명하신 맨 위에 표를 보시면 채권확보율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는데 물론 장기적으로 채권확보율이 높아지기를 기대하고 또 그렇게 노력을 해야겠지만 현재 법안 통과할 때는 지금 확인된 채권확보율 21.3%를 기준으로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맨 왼쪽의 표를 기준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야겠는데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원래 여성가족부에서 생각했던 예산은 제일 상단의 432억 원입니다. 그런데 저희 야당에서 주장했던 전체를 대상으로 했을 경우는 576억 원이라서 한 44억 원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났던 건데요. 지난 회의 때 중위 150% 내지는 다른 법에 따른 기준을 한번 더 고민을 해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에 따라서 중위 125% 이하, 150% 이하 자료를 준비해 주셨는데 소요예산이 별 차이가 없습니다.

432억 원안에서 중위 150% 이하로 하더라도 22억 원밖에 늘어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고, 이 자료를 보면 전체도 576억 원이라서 144억밖에 차이가 안 나니까 여전히 아쉽기는 한데 지난번에 저희 야당 단일안은 아니고 저 개인적으로 전체는 양보를 하고 150% 이하 정도가 예산이 너무 과도하지 않으면 고려해 볼 수 있지 않겠냐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22억만 추가적으로 더 드는 거기 때문에 저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중위 150% 이하 이 정도로 의견을 모아 주시면 어떨까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남근 위원 지난번 회의 때 논의를 할 때 일단은 중위 150% 이하로 하는 걸로 가결 정을 하고 여가부가 뒤에 한번 검토해 본 바에 의하면 행정상 수행하기 상당히 어려울

정도다 그러면 다시 재검토해 보겠다 그랬었거든요.

지금 보니까 양육비 채권확보율 21%로 하면 중위 100%하고 150% 사이에는 한 22억 차이고, 35%로 하게 되면 한 41억 정도 차이 나고, 48%까지 늘어난다고 할 경우에는 오히려 주네요. 30억 정도 차이가 나는 거여서 20억, 30억 정도 차이나는 게 행정을 집행하는 데 그렇게 크게 어려울 정도다 이럴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것 보면 저번에 우리가 가결정을 했던 그대로 하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떠신가요? 그래도 한번 물어봐야지. 그러니까 150%로 하는 경우에 22억 아니면 30억 정도 차이 나는데요, 채권확보율이 높아져도.

○소위원장 김한규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건 다른 부처, 기재부하고도 협의를 아마 하셨을 것 같은데 정부에서 내부 논의하신 바 의견이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부차관 신영숙 지난번 소위에서 위원님들 논의하신 과정을 저도 소상히 잘 이해를 하고 있고 짧은 시간이지만 그런 부분들을 재정 당국에 굉장히 소상히 열심히 전달을 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정부 입장에서는 기존에 지원하고 있던 법률서비스 유사사업에 제시된 125%를 우선적으로 고려를 하셨고요.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국회에서 어떤 취지로 이 부분들에 대해서 논의를 하셨는지는 제가 소상히 아주 강하게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국회 논의를 통해서 아까 제시해 준 가안대로 말씀을 하신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그 이후의 일정에 관해서 재정 당국에서 다른 이견은 제시하지 않을 것으로 저는 판단은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5%를 제시를 해 왔지만 저희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결감수하고라도 위원님들이 정해 주시는 부분들을 저희가 검토는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은 듭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혹시 김 위원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 주십시오.

○김상숙 위원 일단 우선 차관님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입장이 어려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으셨을 텐데 설득 작업을 하셔서 짧은 시간이지만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사실 지금 150%라는 선이 어떻게 보면 여와 야 사이에 서로 간에 배려하고 이해하면서도 정부 입장을 최대한 고려하면서 만들어 낸 정말 어려운 협의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어렵게 만들어 낸 협의점이라서 저는 150%라는 선이 지켜지면서 통과됐으면 하는 입장입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그러면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성가족부에서 그래도 정부 입장을 잘 설명하셔서 원래 야당 위원들은 소요예산 576억, 그러니까 소득요건이 없는 안을 요청을 드렸던 건데 여성가족부가 관련 부처하고 협의를 잘하시고 위원들한테 현실적으로 집행의 어려움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성가족부 입장에서는 나름의 역할을 충분히 하셨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 개인적으로 이게 맞는 방향인지는 의문이 들지만.

그리고 한 가지 더 쟁점이 있는 것 같은데요. 결국 이것을 만약에 중위소득 150% 이하로 정한다 할지라도 법조문을 어떻게 만들지는 별개일 것 같습니다.

배포된 자료에 보면 여성가족위원회 제3차 법안소위 자료에 '선지급 신청요건에 소득요건을 추가할지 여부'라는 한 장짜리 자료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시면 아시겠는데 제일

왼쪽 황명선 의원안은 구체적인 중위소득 기준은 언급하지 않고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걸로 되어 있고 김미애 의원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제일 오른쪽 야당 의원안들은 소득요건이 없기 때문에 아예 조항이 없었던 건데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하단의 박스에 있는 이런 방식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50 이하인 경우’로 하는 방안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관련해서 여성가족부 의견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부차관 신영숙 대안을 말씀드리면 저희는 ‘양육비 채권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경우’의 의원안을 수용하고, 그다음에 부대 의견으로 지금 말씀하신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150 이하 가구로 하는 부분들을 명시를 해 주시면 행정부에서 그 부분을 충실히 따라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법수 위원 대통령령으로 정하겠다는 말씀이에요?

○여성가족부차관 신영숙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하고 이 부분을 부대의견이나 명시를 해 주시면, 법에는 넣지 않고 그렇게 하는 의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여성가족부 입장은 들었고요.

제 의견을 우선 먼저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면 시행령으로 소득기준을 정하는 것은 사실 금액이 자주 변동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개정이 상대적으로 용이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사실은 국회 입장에서 보면 행정부를 100% 신뢰해야 된다는 이슈도 있고 또 두 번째는 법이 기본적으로 정해야 될 기준을 정하지 않는 임무 해태라고 저는 평소에 생각을 합니다. 꼭 이 법안만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우리 국회가 상당히 많은 부분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식으로 기준의 세부적인 논의를 하지 않고 정부가 전문가니까 세부적인 것을 정하시오라는 식으로 권한을 사실상 포기하고 입법을 해 왔다라는 비판 인식이 있기 때문에 저는 시행령에 100% 다 위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법에 최소한의 기준은 정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향후에 100분의 150이 아니라 200%, 300%, 아니면 그 이상 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뒷부분만 문구를 제안을 하자면 ‘중위소득의 100분의 150 이상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경우’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은 미니멈을 100분의 150으로 정하고 그 이상의 범위 내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라는 거고 이런 입법 선례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방안이 있고 아니면 그냥 100분의 150만 딱 정하는 방법이 있고, 저는 최소한 이 두 가지 중에는 해야지 무조건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라고 해버리면 지금까지 저희가 이렇게 논의한 게 다 무의미하고 나중에 대통령령으로 정할 때 기재부가 갑자기 예산상의 문제가 있어서 11월 달에 예산 협의를 해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더라 하고 중위소득 100% 이하로 했을 경우에 현행 체계상 국회가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지금처럼 박스에 있는 문구 정도가 적절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서법수 위원 박스에 있는 문구가 맞다는 거예요?

○소위원장 김한규 하단 박스입니다.

○한지아 위원 하단 박스 2항, 150 이하인데 위원장님께서 이상으로 하자고 하시는……

○김남근 위원 ‘이하인 경우’ 하면 법에서 아예 정해 버리니까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 이렇게 하자는 거지요. 그러니까 대통령령을 정할 때 중위소득의 100분의 150 그 이상의 범위에서 정하라 그런 얘기니까……

그래서 어쨌든 법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할 때는 가능하면 포괄적으로 위임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위임하라는 게 헌법의 정신이고 국회에서 논의할 때 상당히 구체적인 기준을 논의한 게 있어서 위원장님 얘기하신 그런 방식으로 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제가 여성가족부를 못 믿어서가 아니고, 이것은 여성가족부가 결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대통령령은 국무회의에서 통과를 해야 되는데 다른 부처에서도 갑자기 예산상의 문제로 이것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고 그럴 경우에 지금 저희가 논의한 대로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저희가 부대의견으로 단다고 해서 관행적으로 들어주겠이라고 하는 기대지 갈등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거거든요. 저희한테 그런 신뢰에 기반해서 입법을 해 달라고 요구하는 건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여당 위원님들은 의견이……

○김남근 위원 아니, 그런데……

○소위원장 김한규 말씀하시지요.

○김남근 위원 국회가 여가부를 못 믿어 가지고 법안 한다 그러면 좀 그럴 것 같고 어쨌든 헌법의 정신이 국회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한 게 있으면 그 논의한 걸 바탕으로 위임을 하라는 거니까, 저희가 어쨌든 여가위 법안소위에서 여러 차례 논의한 것은 적어도 중위소득 150 이하의 범위에서는 하자라는 내용이니까 그 내용을 담아서, 국회에서 논의하는 기준을 담아 가지고 시행령에 위임을 했으면 좋을 것 같고 그 방식이 ‘100분의 150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경우’ 이렇게 하면 대통령령을 만드실 때, 시행령을 만드실 때 ‘중위소득 100분의 150 이상의 범위에서 이하인 경우’ 이렇게 정할 수 있는 거니까요. 100분의 150 이하, 100분의 200 이하, 100분의 300 이하 이렇게 정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지아 위원 죄송한데 제가 늦어 가지고……

양육비 선지급 대상 소요예산 추계 관련해서는 양육비 채권확보율이 48.3%일 경우에는 100%와 전체를 했을 때 그 차이가 한 400억 정도 되는 거지요? 1311억 빼기 973억 원이니까요.

○여성가족부차관 신영숙 채권확보율에 따라서 추정치가 달라진다라는 부분들을 제시한 겁니다.

○한지아 위원 그런데 최대치를 저희가 잡은 게……

○여성가족부차관 신영숙 저희가 그때 정부 추계로 말씀드렸던 것은 현재의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21.3%일 경우를 가정해서 했고 이 부분을 48.3%까지 잡은 이유는 실태조사 결과 채권확보율이 결정 안 된 비율까지 합한다고 하면 41.3%가 됩니다.

○한지아 위원 그러면 최대 차이가 나는 게 한 400억 정도인 거네요?

○여성가족부차관 신영숙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남근 위원 전에 우리가 논의한 것은 전체로 하지 말고 100분의 150으로 하기로 했었는데 그러면 30억밖에 차이가 안 나요.

○한지아 위원 30억 차이니까 이것은 저는 그냥 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150% 이상으로.

○서범수 위원 이상인지 이하인지 이 개념이지요. 그렇지요?

○김남근 위원 아니,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니까, 대통령령은 다 이하로 정하는 거니까 100분의 150 이하가 될 수도 있고 100분의 200 이하가 될 수도 있고 그건 시행령에서 정하는 게 되니까요. 그런데 최소한 100분의 150 이하로 정해야 되는 거지요.

○여성가족부기족정책관 최성지 가족정책관입니다.

저희가 재정 당국하고 일단 100분의 125나 100분의 150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요. 100분의 150 이하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라고 위임을 해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지금 차관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고요. 이상으로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얘기라서 그것은 별도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이하라고 해 주시면……

○김남근 위원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니까 대통령령에서는 100분의 150 이하, 100분의 200 이하 이런 식으로 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위임하는 방식이지.

○김상욱 위원 내용에서는 차이가 없는데……

○소위원장 김한규 약간 오해하신 것 같은데 법률 조항을 만드는 방식인데 시행령에다가 권한을 오히려 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안 하고 그냥 '100분의 150 이하인 경우'로 하면 그냥 간단한데요. 혹시 나중에라도 일이 낸 후에 이걸 더 늘리실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를 대비해서 100분의 150 최소 기준만 정하고 그 이상으로는 굳이 법을 다시 바꿀 필요 없이 시행령만 바꾸셔서 하실 수 있게 시행령에 금액 자체가 100분의 150 이상이어야 된다라는 취지인 거지 그 이상의 사람에 지급한다라는 취지는 아니지요.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50 이상의 범위 내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경우' 말로 하니까 너무 어려워 보이는데 만약에 정 불편하시면 '100분의 150 이하인 경우' 그냥 단일안으로 이렇게 가겠습니다.

그러면 시행령으로 아예 금액 기준을 정할 필요 없는데 나중에 이걸 200%로 올리겠다고 하면 법을 또 바꾸셔야 된다라는 문제는 있습니다.

지금 표정을 보니까 제 말씀이 여전히 잘 이해가…… 저랑 생각이 다르신 것 같은데 내용을 바꾸는 취지는 전혀 아닙니다.

○여성가족부차관 신영숙 위원장님, 그러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50 이하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김남근 위원 그렇게 하면 그야말로 중위소득의 50도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하면 여기서 논의한 것하고 정반대지.

○여성가족부기족정책관 최성지 그러면 100분의 100 이상, 100분의 150 이하로 그렇게 정해 주시면……

○소위원장 김한규 그냥 그렇게 할까요, 지금 박스 모양으로?

○서범수 위원 150 이하인 경우.

○소위원장 김한규 그러니까 시행령으로 안 바꾸겠다는 거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지요. 아예 법으로 정하는 거지요.

○서범수 위원 100분의 150 해도 되지요? 법으로 정해도 되지요?

○여성가족부차관 신영숙 아까 김남근 위원님이 우려하신 것처럼 그렇게 된다 그러면 중위소득의 100분의 100 이상, 100분의 150 이하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김남근 위원 그게 아니지.

○소위원장 김한규 죄송한데 여성가족부에 변호사 없으세요, 법조인? 혹시 비슷한 법문을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서. 이게 무슨 내용의 문제가 아니고 테크니컬한 법기술적인 문제라서 지금 약간 이견이 있어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질적으로는 생각이 안 다른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합의하기 어려우시면 하단 박스 안에 있는 걸로 그냥 간명하게 가시지요. 그렇게 하시지요.

○서법수 위원 그래도 되지요. 지금 ‘이상’이라는 용어가 들어가니까 아마 여가부 쪽에서는 좀 그럴 수 있다, 다르게 이해할 수가 있다 하니까……

○여성가족부차관 신영숙 왜냐하면 저희가 또 다른 이해를 시켜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저도 이해는 했습니다.

○서법수 위원 여하튼 중위소득 150% 정도는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여성가족부차관 신영숙 그걸로 결정해 주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그렇게 하시지요.

그리면 마음 바뀌기 전에 빨리 의결하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한데 한 가지, 시행일자 관련해서 지금 협의된 건 2025년 7월 1일부터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통상적으로는 법 통과 후 1년이나 6개월인데 여성가족부에서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제도가 있으니까 제도의 중단 없이 이어지기를 원해서 7월 1일을 원하시는 거고 저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예산에 혹시 부담이 될까 봐 1년 후로 정하시면 되지 않나라고 했는데 여성가족부가 그 부분은 저에게 별도로 설명하실 때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빨리 시행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셔 가지고 그러면 7월 1일로 원안대로 그대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그렇게 협의가 됐는데 혹시나 해서 다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까지 십사한 제1항부터 제8항까지 7건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1건의 양육비 대지급을 위한 특별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9.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74) 번안의 건

10.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67) 번안의 건

1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30) 번안의 건

1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77) 번안의 건

1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44) 번안의 건

(14시28분)

○**소위원장 김한규** 한 가지 더 설명드릴 게 있는데요.

지난번에 저희 소위에서 5건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해서 계류 중인데 법체계상 일부 내용 추가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건을 오늘 의사일정으로 추가 상정해서 국회법 제91조제2항 및 제57조제8항에 따라서 번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해당 안건을 번안하고자 의사일정 제9항부터 13항까지로 추가 상정해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병진·이달희·김남희·강유정·조은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5건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사일정 제9항부터 13항까지로 추가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자료인지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두 번째, 한 페이지짜리 추가논의 자료입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한 장짜리 자료인 거지요, 법안소위 추가논의 자료?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9월 19일에 법안소위에서 의결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이용하여 그 아동·청소년을 협박·강요한 자에 대한 처벌조항을 제11조의2에 신설하고 있습니다.

현행법 제2조제2호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개정안 제11조의2에서 신설하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강요죄를 포함할 필요가 있으므로 제2조 가목 및 제3호에 제11조의2를 추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국가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국민체육진흥법 등 다수의 법률에서 결격사유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대상 범죄에 포함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차관 신영숙** 수석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감사합니다.

제가 먼저 위원님들께 부연설명을 잠깐 드리면, 자료 박스를 보시면 현행에 ‘제9조부터 제15조’라고 밑줄이 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 11조의2가 추가되는 거거든요. 제가 처음에 생각할 때는 11조의2가 추가되더라도 제9조에서 제15조까지로 하면 다 포함되는 거 아니냐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나중에 조항이 추가됐을 경우에는 그것을 명시하지 않으면 그 조항은 추가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라는 판례가 있어서,

이해가 잘 안 되는 판례기는 한데 그 판례의 취지에 따라서 중간에 추가된 조항은 제11조의2라고 추가해야지만 빠짐없이 다 포함하는 게 된다고 합니다.

약간 법기술적인 건데 제가 그 부분의 판례는 모르고 있었는데 전문위원이 확인하는 과정에서 입법기술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게 확인돼서 이건 내용이 바뀌는 게 아니라 저는 통과시키면 팬찮을 것 같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의견이 없으시니까 번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 거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번안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3항까지 5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19일 소위에서 논의한 결과와 지금 논의한 내용을 반영해서 이를 하나의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안건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문안 작성 및 자구 정리는 소위원장한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심도 있는 법안 심사를 위해서 힘써 주신 위원님들 그리고 여성가족부차관님을 포함한 관계 직원 여러분, 보좌진들 또 수석전문위원을 포함한 위원회 직원과 속기사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산회)

○출석 위원(6인)

김남근 김상욱 김한규 백승아 서범수 한지아

○첨가 위원(1인)

전진숙

○출석 전문위원 및 입법심의관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여성가족부

차관 신영숙

기획조정실장 김기남

청소년가족정책실장 황윤정

권익증진국장전담직무대리 조용수

가족정책관 최성지